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0. 12. 17	규칙 제 621호
일부개정	2013. 7. 10	규칙 제 711호
일부개정	2014. 9. 15	규칙 제 759호
일부개정	2015. 12. 21	규칙 제 821호
전부개정	2017. 8. 7	규칙 제 879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20. 5. 15	규칙 제1002호
일부개정	2024. 7. 15	규칙 제1140호(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5. 5. 2	규칙 제1162호(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용인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7. 15>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

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수령거부자, 납세의무자와의 관계 및 유치장소 등을 유치송달보고서에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삭제 <2025. 5. 2>

제5조의3 삭제 <2025. 5. 2>

제5조의4 삭제 <2025. 5. 2>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용인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5>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용인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

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 도세 체납액 순으로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과세전적부심사 사후조치) 구청장은 시장으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 건에 대한 채택 또는 일부채택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등 사후조치) ① 구청장은 시장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취소 또는 결정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거나 법원에 소장 또는 상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7. 15>

부칙 <2017. 8. 7 규칙 제87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용인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4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용인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

제17조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 별지 제99호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2조 별지 제426호서식의 세무

공무원증”으로 한다.

제5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5. 15 규칙 제10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7. 15 규칙 제1140호,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후단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13조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부칙 <2025. 5. 2 규칙 제1162호,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5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별지 제4호의4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송 달 부 (교부)									
과세번호 납세자명 출력순번 과세물건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납부세액	우편번호 연락처	주소	교부 장소	수령인			수령 일자	미교부 사유
					성명	납세자와의 관계	서명		
누 계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구분	세목	연도/ 기분	납세의무자		송달지	등기 번호	반송일자	반송사유	인수자
			성명	주소					
※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함									

※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백상지 80g/㎡)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삭제 <2025. 5. 2>

[별지 제4호의3서식] 삭제 <2025. 5. 2>

[별지 제4호의4서식] 삭제 <2025. 5. 2>

[별지 제6호서식]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

과세 번호	연도/ 기분	납세의무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세액(본세)					취소· 경정사유
		성명	주소		세목	당초	취소	경정	비고	

※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고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

[illegible][illegible]

※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8호서식]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							
환급금 내역	연도/기분(월)	환급금액	합계	OO세	OO세	OO세	OO세
일련번호	연대납세의무자 주소					동의 (서명·날인)	비고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총당 결의서										
결재		발의				년월일		(인)		
징수관		징수부등재				년월일		(인)		
과장		지방세환급금 정리부등재				년월일		(인)		
팀장		총당통지서발부				년월일		(인)		
담당자		통지서번호				년월일		(인)		
총당금액 (금 원) (\)										
세입항목	구분	세입연도	세입과목				환급금 총액	과오납 연월일	환급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소	성명
	총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총당액 총액)									
총당내역	구분	세입연도	세입과목				미납 총액	총당액	납세의무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소	성명
	총당 후 미수납(총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									
적요									수납부정리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처리 결과보고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제 호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장								
	상호								
연도 기분	세목	당초 결정		취소(경정)결정		차감액		감액 결정일	비고
		과표	세액	과표	세액	과표	세액		

붙임 : 조치사항 관계서류 사본 1부. 끝.

행정기관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11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이의신청 심의결정 처리 결과보고**

이의신청 결정서 제 호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연도 기분	세목	당초 결정		취소(경정)결정		차감액		감액 결정일	비고
		과표	세액	과표	세액	과표	세액		

끝.

행정기관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12호서식]

☐ 조세심판원 ☐ 법원 에 의한 지방세구제청구사항보고							
당사자	청구인					처분청	
	주소	법인명 또는 상호		성명			
불복경위	제출 연월일	제출기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상황				
			청구구분	결정연월일	각하	기각	경정
		1. 조세심판원	1. 이의신청	년 월 일			
	2. 법원	2. 심사청구	년 월 일				
		3. 소송제기	년 월 일				
처분내용	세목	과표	세액	연도(기)분	채납 여부	고지연월일	
	처분 사유						
불복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